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 미래교육과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5호로 2023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사업내용	-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정책사업 추진과 민·관·학 협업을 통한 영등포 교육의 플랫폼 역할 수행
출연금의 범 위	- 기본재산 적립 - 운영비 - 인재육성 장학금 - 미래교육지구사업 - 과학인재양성사업(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등)
출연금액	1,154,027천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5.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 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본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기존의 영등포구 장학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목적사업에 인재양성 사업을 추가하고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영등포구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음.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과학인재 양성, 평생학습 지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까지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행하게 될 예정이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문화체육과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4호로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범 위

-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문화행사 추진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관리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 출연금액: 10,426,237천원

- 재단본부 인력 운영 및 구민회관 운영관리: 3,371,383천원
- 지역 대표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예술 활성화 추진: 611,396천원

- 공연기획 운영 및 문화행사 홍보 활성화: 613,652천원
- 문화도시 환경조성: 432천원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
232,415천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5,049,788천원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547,171천원

※ 출연 가부에 대해 구의회 사전 동의 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설립 및 위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의 추진 등) 및 제6조(사업의 지원)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과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 예술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